

의안번호	324
발의일자	2023. 8. 17
회부일자	2023. 8. 22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 8. 30. (수)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농 수 산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진영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황재철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국내의 어선의 남획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각종 문제점 또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관리기술 연구개발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수산종자의 분양을 규정함(안 제7조)
-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8조)

#### 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예고기간 : 2023. 8. 23. ~ 8. 2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2호)
- 의견제출 : 없음

#### 6. 검토의견

##### 가. 본 제정 조례안은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을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함.

#####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책 수립 및 경상북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명시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본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안 제6조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수산종자의 유·무상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종자 분양을 통해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연안의 어족자원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의 실시와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항은 경상북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도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